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2월 30일, 박희승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1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보수,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

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서,[1] 1996년 충청북도 괴산군 및 강원도 화천군에서 처음 발행되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모바일·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구매·사용 촉진을 위하여 통상 권면금액 보다 할인하여 판매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최대 10%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역사랑상품권

수준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2)]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였으나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총 발행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100억원의 국비로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이 지원되었으며, 같은 해 총 발행규모는 0.4조원 수준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는 1조 2,522억원의 국비로 20.2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이 지원되었으며, 같은 해 총 발행규모는 23.6조원이었음. 이후 국비 지원규모는 감소하여 2023년에는 3,522억원의 국비로 8.8조원의 상품권 발행이 지원되었으며 같은 해 총 발행규모는 20.9조원이었고, 2024년에는 2,998억원의 국비로 약 8.8조원의 상품권 발행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며,[3)] 2025년에는 국비가 미반영되었음.

2)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1.1., pp.12-13.

3) 참고로, 2023~2024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된 것임.

[2018~2024년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및 발행 규모]

(단위: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규모	100억	884억	6,689억	1조3,522억	7,050억	3,522억	2,998억	-
국비지원 발행규모	1,000억	2.3조	9.6조	20.2조	18.4조	8.8조	8.8조	-
지원율	10%	-고용위기지역 등 4% - 기타 2%		- 본예산 6~8% ※교부세불교부단체 3~4% - 추경예산 4%	4%		- 인구감소지역 5% - 기타 2% ※재난지역 등 추가 지원	-
총발행규모	0.4조	3.2조	13.3조	23.6조	27.2조	20.9조	집계중	발행중

주) 국비지원 발행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총발행규모는 실적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총 191개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데, 다음 표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미발행하는 경우(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 6곳) 그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미발행하는 경우(양양시 및 일부 광역시 산하 자치구 등 46곳) 그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발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의 주민이 1개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지자체	발 행	미발행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 25개 지자체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 부산 남구	14개 기초자치단체 (동구, 남구 제외)
대구	대구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	9개 기초자치단체 (동구 제외)
광주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 대덕구	4개 기초자치단체 (대덕구 제외)
울산	울산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강원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청북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청남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라북도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라남도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상북도
경남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Voucher/screen.do)

2. 개정안 검토[4]

(1)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명시

박희승의원안은 현행법의 목적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박희승의원안 제1조).

현 행	박희승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ⅰ) 헌법[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7]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고, ⅱ)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 외 자금유출방지 효과

4)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2024. 9. 5.)되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2024. 9. 11.)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2024. 9. 19.)되었음. 그러나, 동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2024. 10. 2.)에 따라 2024년 10월 4일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었으나 재의요구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음.

5)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통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이미 동 개정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같은 날 정부에 이송하였는데,[8] 당시 국회 의결안의 자구는 박희승의원안과 동일하였음.

(2) 정부 예산안 등 반영 의무화

개정안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 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이수진·박희승의원안은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 및 정부 예산안 모두에 대한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고(이수진의원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및 박희승의원안 제15조제2항·제3항 신설), ② 위성곤의원안은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대한 반영만 의무화하고 있음(위성곤의원안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현 행	이수진의원안	위성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9] ①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② (개정내용 생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⑤ (현행 제2항과

8) 이후 10월 2일 정부에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4일 본회의에서 제의를 부친 결과 부결되었음.

현 행	이수진의원안	위성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목차 (8)에서 검토)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0]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		③ 기획재정부장관

현 행	이수진의원안	위성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신 설>	은 제5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개정내용 생략: 목차 (9)에서 검토)		은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후단 개정내용 생략: 목차(6)에서 검토) ④ (개정내용 생략: 목차 (9)에서 검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비지원 필요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3~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시 논의가 이루어졌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3~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23~2024년도 예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일정 금액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2021~2024년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국회 심의 경과]

(단위: 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추경	합계			
정부예산안	1조2,522억	2,400억	-	2,400억	-	-	-
확정예산	1조2,522억	6,050억	1,000억	7,050억	3,522억	2,998억	-
국회증감	-	3,650억	1,000억	4,650억	3,522억	2,998억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당시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논리로는 상품권 할인판매 및 제도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역 내 소비촉진 효과를 상쇄한다면 전체적인 사회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후생은 감소할 수 있고[11],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이 발생한다면 소비촉진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12] 등이 제시되었음.

반면, 국비 지원에 찬성하는 논리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있고[13],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이 증가하는 상황[14]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15]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16]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2020.12.

12) 머니투데이, “與 "지역화폐 받아 현금깡" vs 野 "지역화폐 예산 삭감 부적절", 2022.10.4.

13) 여효성,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14) 주민들이 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소비 행위를 하는 상황을 의미

1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6.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2%,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2022.10.24.) 회의록 p.61.

16) 한국행정연구원(수행연구원 이민호), 2022.6.27.~2023.1.23. 수행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주요 결론]

구분	조사방법	주요 결론
정량적 효과	(삼중차분) 회귀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상품권 총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 **매출:** 적용업종 평균 매출액 8.33% 증가 – **고용:** 적용업종 평균 종사자수 2.10% 증가, 사업체수 1.39% 증가
정성적 효과	설문조사	○ 상품권이 없었을 경우 – **이용자 소비:** “10% 이상 감소 예상” 응답 21.0%, “동일 예상” 응답 51.0% – **가맹점 매출:** “감소 예상” 응답 53.8%, “동일 예상” 응답 45.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2023.1.

② 국비지원 의무화 규정 신설의 적절성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임.

우선 이수진·박희승의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정부의 의무 이행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① 헌법상 정부 예산안 편성권[17]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제한 없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지역 경제규모 또는 재정여력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반면, 위성곤의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담보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재정법」[18]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통

---

17)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보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19]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수요를 제한없이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나머지 재정사업을 위한 지출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성곤의원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비 지원 수요를 같은 법에 따른 지출한도에서 제외한다는 특례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이미 동 개정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같은 날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당시 국회 의결안의 자구는 위성곤의원안과 동일하였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국비지원 규정의 의무화는 법률로 특정 예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정부 예산안 편성권과 충돌하거나 개별 부처의 예산요구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

18)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19) 「국가재정법」상 지출한도 통보는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안 편성 실무상 매년 지출한도가 통보되어 각 부처(중앙관서)는 그 범위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음.

③ 시행일 및 적용례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정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통상 “○○○○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20]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제도를 시행함을 명확히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개정안들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상기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및 행정안전부의 예산요구서 작성·제출이라는 2~3단계의 절차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20)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도를 신설하며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4 및 별표 2 제7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국무회의 보고 등을 신설하며 그 시행일을 각각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로 규정

(3)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개정안들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현행법상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면서(이수진·위성곤·박희승의원안 제15조제1항),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위성곤의원안 제15조제1항).

현 행	이수진 · 박희승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 ---------- ---------- ---------- ---------- ----------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 ----------위하여------ ---------- ---------- ---------- ----------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박희승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수진·위성곤의원안)		

①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의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자치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21] 국가사무에 비해 지원의 우선순위는 낮을 수 있으므로,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21) 예를 들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되어 있음. 즉, "보조금" 제도 자체가 보조사업자의 고유 사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가능하다 할 것임.

판례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법령 규정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지 여부 및 경비부담과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음.[22]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ⅰ) 상품권의 발행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발행권자로 규정[23]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발행 및 폐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ⅱ)발행비용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24]하고 있으나, 국가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25]을 할 수 있음. ⅲ) 사무의 성질의 측면에서는 상품권 발행·유통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6]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특히, 제3호 농림·수산·상공

---

2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8다71575 판결요지)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24) 2018~2024년간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였으나, 발행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각 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각 목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업 등 산업 진흥)에 포함되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용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수행 등[27]을 할 수 있어 국가사무의 측면도 나타남.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자치사무과 국가사무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짐.

한편, 국가에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 다음 표와 같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각 목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각 목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각 목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각 목 생략

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 입법례]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1	「건축물관리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공외교법」 제4조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1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대학도서관진흥법」 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연구와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2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4	「스포츠기본법」 제25조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5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제1항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3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4항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9	「종자산업법」 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4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5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8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4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번	법률명 및 조문	내용
5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7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필요성

위성곤의원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면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위임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원내용을 협소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이미 동 개정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같은 날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당시 국회 의결안은 위성곤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와 규정 형식 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③ 시행일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목차 (2)의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한 반

영과 달리 1년 단위의 업무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도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행정계획 등 수립 의무화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5년 주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년 주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이수진의원안 제3조의2・제4조제2항 신설).

현 행	이수진의원안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현 행	이수진의원안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28] ① (생 략)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성

법령상 국가의 종합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 의무는 국가가 특정 사무를 종합적·중장기적 시계 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짐.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사무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수립할 실익이 있을 것임.

따라서 목차 (2) ~ (3)에서 살펴본 정부 예산안 반영 의무화 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은 해당 의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중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의무]

법률명 및 조문	기본계획명	수립 주기	국회 보고 의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3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	안전교육기본계획	5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3년	×
「도로명주소법」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5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5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	×
「온천법」 제3조의2	온천발전종합계획	5년	×

법률명 및 조문	기본계획명	수립주기	국회보고의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5년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5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매년	상임위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5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5년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전자정부법」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	지진방재종합계획	5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5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정부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계획에 구속·획일화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던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발행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성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계획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이며 2024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 ②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 단위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발행수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실태조사 의무화

이수진·위성곤의원안은 현행법상 정부 재량사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수진·위성곤의원안 제15조의2).

현 행	이수진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22년 11월 15일 신설되고 2023년 5월 16일 시행되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2024~2025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 밖의 재원으로 이를 실시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목차 1"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처음 발행된 이래 19년째 계속되며 2024년 현재는 총 11개 광역자치단체(전체 광역자치단체의 64.7%), 180개 기초자치단체(전체 기초자치단체의 79.6%)에서 발행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과 별개로 연속성 있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발행·이용 실태 및 정책 효과 등을 조사하여 공유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발행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학계에서는 이를 기초자료로 연구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24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발행	미발행	소계
광역자치단체	11개	6개	17개
기초자치단체	179개	47개	226개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Voucher/screen.do)

둘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및 반기별 발행실적을 신고받도록 하는 등 그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29]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해당 책임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법률로 의무화한다면 실무적으로 관련 용역비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이미 동 개정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같은 날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당시 국회 의결안은 위성곤의원안과 실태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동일한 자구로 구성되었음.[30]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태조사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

2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당시 국회 의결안의 실태조사 주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었음

(6)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32]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박희승의원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

현 행	박희승의원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31] ① (생 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신 설>	②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

ⅰ)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모두 지역의 제반 여건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33] 목적적 연관성이 있고, ⅱ) 정부도 다음 표와 같이 이미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율(5%)을 나머지 지역(2%)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2018~2024년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비지원율	10%	- 고용위기지역 등 4% - 기타 2%		- 본예산 6~8% ※ 교부세불교부단체 3~4% - 추경예산 4%	4% ※불교부단체 2%	- 인구감소지역 5% - 기타 2% - 불교부단체 미교부	- 인구감소지역 5% - 기타 2% ※ 재난지역 등 추가 지원 - 불교부단체 미교부

주) 국비지원율은 예산 확정시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이미 동 개정내용을 담은 「지역사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같은 날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당시 국회 의결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었음.[34)]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

3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⑦ 국가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7)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이수진의원안 제10조의2 신설).

현 행	이수진의원안
<신 설>	제10조의2(가맹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35]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점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인 개별가맹점과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포괄하는 개념임.[36]

이러한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

3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확대여부에 관계 없이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증가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가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지원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에 대한 중복 지원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시 할인율 하한 명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시 할인율을 원칙적으로 1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이수진의원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현 행	이수진의원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할인율은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되,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시 할인율을 평시 10%,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시, 1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37][38]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유인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할인율이 확대되면 사용자와 가맹점이 담합하여 상품권을 불법환전(상품·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 현금만 주고받으며 거래한 것으로 가장)할 유인이 제고되며, 이 경우 상품권 판매 규모는 증가하고 재정비용도 증가하지만 소비촉진 효과는 그만큼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되는 경우, 사용자는 권면금액 100만원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매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가맹점에서 불법환전할 유인이 있음. 반대로 가맹점은 권면금액 10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같은 금액으로 환전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90만 9,090원[39]을 최종 수령하므로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용자에게 불법환전해줄 유인이 있음. 즉, 현재와 같이 상품권이 10% 할인판매되면 권면금액 100만원의 상품권을 불법환전하여도 사용자와 가맹점이 나눠

37)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4.2. pp.14

38)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5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9) 매출액 1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 ÷ 11 = 9만 909원

가질 수 있는 차익은 권면금액의 0.909%인 9,090원에 불과함.[40)]

그러나 할인율이 15%인 경우, 권면금액 1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용자는 구매금액 85만원 보다 큰 금액이면 이를 불법환전할 유인이 있고 가맹점은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90만 9,090원 미만이면 사용자에게 불법환전해줄 유인이 있어, 사용자와 가맹점이 나눠가질 수 있는 차익은 권면금액의 5.909%인 5만 9,090원으로 확대되어 불법환전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상 할인율, 1인당 구매한도, 가맹점당 환전한도 등을 표와 같이 개편하였음.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환전한도 개편 내용]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이후
할인율	적정할인율 5~8%로 제시 ※ 10%로 확대시 행안부 협의	최대 10%까지 자율적 허용 ※ 국비지원 발행분은 10% 의무
1인당 구매한도	70만원	10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 결정
가맹점 환전한도	5,0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적 결정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1.1., p.19.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확대 외에도 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 고령자 등 제도 소외자에 대한 홍보 및 실무지원 확대 등의 방안 또한 검토가 가능할 것임.

40) 추가로 가맹점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차익은 더욱 적어짐.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부정유통을 단속하여 환수한 금액은 2021년 7,000만원, 2022년 2,500만원, 2023년 3,500만원으로서 매년 20조원 이상인 총발행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지급 근거 명시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경비(이수진의원안) 또는 주민·공무원·공공기관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지출(박희승의원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이수진의원안 제15조제7항 신설 및 박희승의원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 행	이수진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41]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② (개정내용 생략: 목차 (8)에서 검토)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⑤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⑥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생략: 목차 (3)에서 검토)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개정내용 생략: 목차 (2)에서 검토) ③ (개정내용 생략: 목차 (2) 및 (6)에서 검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제13조[42]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임금[43]을 지급하거나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만을 금지할 뿐,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주민·공무원·공공기관임직원 등 수령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

우선 다음 표와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총괄 조례를 통해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

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43) 참고로, 최근 판례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각종 지출의 지급 근거 마련 조례(광역자치단체)]

연번	조례명	내용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9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19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번	조례명	내용
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⑥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수당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9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등)**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연번	조례명	내용
11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상품권 이용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
12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지출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서 해당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의 경우 같은 법[44]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성남시·순창군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의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

연번	조례명	내용
1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의 경우에도 다음 표와 같이 울산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44)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5]

[농어민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

연번	조례명	내용
1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③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부천시·춘천시·청주시·부여군·남원군·목포시·남해군 등은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맞춤형 복지혜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조례(일부)]

연번	조례명	내용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7조(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포상금 및 시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4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9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45) 동 수당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바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연번	조례명	내용
5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장려금 및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출산장려금,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7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9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 또는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률·조례 제·개정 없이 보다

간이한 의사결정 절차만을 거쳐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ⅰ) 전술한 것처럼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출 유형을 서로 상이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ⅱ) 개정안 중 박희승의원안의 “각종 복지성 수당”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저소득층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유형별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출 유형만을 정하고, 추가적인 지급 근거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